증권담보융자 설명서

(2023. 08. 07 개정)

1. 융자서비스 개요

고객의 계좌에 예탁/등록된 증권을 담보로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2. 융자약정

- 1)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실명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해 약정 가능합니다.
- 2) 고객 본인의 계좌관리지점에 직접 내점하여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. ※ 단,HTS 고객은 주식, 채권담보융자에 대하여 HTS 약정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3) 1회 약정으로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, 고객 요구시에 약정만료일 지정이 가능합니다.
- 4) 약정시 개인고객은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인감이 필요하며, 법인계좌는 위임장 (거래인감 날인), 사업자등록증, 거래인감,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.
- 5) 다음과 같은 고객은 융자약정이 불가합니다.
 - ① 미수계좌.
 - ② 담보부족계좌.
 - ③ 위탁증거금 면제계좌.
 - ④ 미성년자 및 채무불이행자.
 - ⑤ 당사 특수관계인.
 - ⑥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 자.
- 6) 융자약정시 본인의 융자한도를 정하며, 융자한도 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대금을 징수(온, 오프라인 동일징수)합니다. 융자한도는 계좌별 한도가 아니라 실명번호 (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 및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(등록)번호) 기준으로 총 한도입니다.
 - ① 융자한도: 개인-1억원, 법인(단체)-3억원
 - ② 한도증액: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당사의 기준에 의거, 심사 후 증액이 가능하며 증액금액은 신청 고객의 신용상태, 기여도, 융자대상 증권평가내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.



3. 융자신청 및 융자

- 1) 융자신청
 - ① 융자신청은 융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좌관리지점에 신 청하셔야 합니다.
 - ② 지점방문 신청외, 유선 및 HTS 및 MTS (HTS 및 MTS의 경우 주식, 채권담보융자 한정) 신청도 가능합니다.
 - ③ 융자신청시 개인은 신청서(거래인감 날인)을 징구하며, 법인은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, 대리인 실명확인증표, 신청서(거래인감 날인)를 징구합니다.
- 2) 융자대상 증권
 - ① 융자대상 증권은 고객 계좌내 보유한 증권에서 지정합니다
 - ② 융자 최소단위는
 - 가) 주식인 경우: 1주 단위로 지정
 - 나) 채권의 경우: 10,000원 단위로 지정 하며, 지정 후엔 증거금으로 사용이불가능합니다.
 - 다) 수익증권의 경우: 1좌 단위로 지정
 - ③ 융자대상 증권은
 - 가) 상장주식(증권시장)인 경우
 - 신용A종목 : KOSPI200,은행주, 증권주, 보험주, 시가총액 3,000억원 이 상의 당사지정 10대그룹 계열사 종목, 상기종목 우선주 (보통주대비 저가)
 - 신용B종목 : 신용A종목군외 유가증권시장종목, 신용A종목군 외 코스닥 150종목
 - 신용C종목 : 신용A,B종목군 제외한 코스닥시장종목 (단, 3개월 일평균거래대금 1억원 이상)
 - 나) 상장채권의 경우

국채, 지방채, 3개신용평가기관 중 2개기관이상에서 AA-이상의 신용등급이 부여되고, 융자요청시 잔존만기가 3년미만인 공사채와 은행채중 당사가 정한 종목

- 다)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형, 채권형, 혼합형, MMF 집합투자증권 (단, 당사가 제외한 수익증권은 불가)
- 라) 기타 증권(융자대상제외 증권 포함)은 별도의 당사 심사를 거쳐야 융자 대상종목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.



- ④ 융자대상제외 증권:
 - 가) 관리종목, 투자위험종목, 투자경고종목,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채권
 - 나) 위탁증거금 현금 100% 징수종목
 - 다)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한 종목

3) 융자한도

- ① 융자한도는 고객이 약정시 정한 최고융자한도금액 내에서
 - 가) 상장주식의 경우 : 융자대상종목 전일종가에 따른 평가금액의 50%~ 60%까지 융자 가능

(신용 A 종목군 : 60%, 신용 B 종목군 : 55%, 신용 C 이하종목군 : 50%)

- 나) 상장채권의 경우 : 융자대상종목 대용가의 60%까지 융자 가능
- 다) 수익증권의 경우 : 융자대상 수익증권 평가금액의 60~70%까지 융자 가능 (주식형 : 60%, 혼합형, 채권형, MMF : 70%)
- ② 종목별 1회 융자최저금액은 1만원이며, 융자신청금액 단위는 1만원입니다.
- ③ 신용점수변경에 따른 융자한도 변경은 NICE평가정보(주)에서 제공하는 고객의 신용점수 변경에 따라 융자한도가 증액 또는 축소 될 수 있습니다.

4) 융자기간

- ① 융자기간은 90일입니다.
- ② 단, 융자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을 융자만기일로 하며, 이 경우 이자징수는 익영업일까지의 이자를 징수합니다.
- ③ 융자만기일 연장은 고객 요청시,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
5) 융자금리

- ① 융자금리 및 연체이자율은 회사 홈페이지 게시(고객센터> 업무안내> 신용공여 안내>증권담보융자)되어 있습니다.
- ② 융자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일 당일 융자분부터 적용됩니다.
- ③ 융자이자는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하며, 중도상환의 경우는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합니다.

4. 담보관리 및 담보교체

1) 담보관리

①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공여융자액(2개 이상의 신용공여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함) 또는 신용 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40%~170%로 (신용A종목군 및 수익증권: 140%, 신용B종목군: 145%, 신용C이종목군: 150%, 신용불가종목군: 170%), 종목군별로 차등 적용하며,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



납입을 요구합니다.

최소담보유지비율 미만 시 추가담보납부기간은 요구일로부터 1영업일이내입 니다.

- ②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최소담보유지비율 외에 추가로 임의상환담보유지비율을 요구합니다. 이 경우 임의상환담보유지비율은 신용공여융자액(2개 이상의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함)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20%이며, 미달시 고객은 담보부족 발생일 당일까지 담보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.
- ③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통화내용 녹취, 전자메일, SMS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- ④ 융자대상 증권의 평가는
 - 가) 상장주식의 경우 : 담보주식(원담보주식 및 부담보주식)평가는 당일종가 (당일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)로 계산합니다.
 - ※ 단, 부담보주식 평가시 대용가가 없는 종목(관리종목, 정리매매종목, 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 등)은 담보 가치가 "0원"으로 평가됩니다.
 - 나) 상장채권의 경우 : 담보채권(원담보채권 및 부담보채권)평가는 2개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(기준가격:시가평가)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. 다) 수익증권의 경우 : 담보 수익증권의 평가는 기준가로 계산합니다.
- ⑤ 추가담보납부기간(최소담보유지비율 미만시에는 요구일로부터 1영업일이내 이며, 임의상환담보유지비율 미만시에는 요구일 당일)동안 추가담보를 제공 하지 않을때에는.
 - 가) 상장주식의 경우 : 익영업일에 아침 동시호가에 하한가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합니다.
 - 나) 상장채권의 경우 :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처분하여 담보유지 비율을 충족시킵니다.
 - 다) 수익증권의 경우 : 익영업일 아침 기준가 환매를 통하여 임의상환 정리합니다.
- ⑥ 담보로 지정된 증권에 대해서는 출고가 불가능 합니다.

2) 담보교체

담보교체는 고객 요구시 교체가 가능하며, 교체 증권의 융자가능금액이 융자잔고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가능 합니다.



5. 질권의 설정 및 해지

- 1)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별도의 약정없이 증권담보융자 약정 체결과 함께 체결됩니다.
- 2) 질권설정은 융자신청에 따라 담보로 징구되는 증권에 대해 융자금 지급시 이루어 집니다.
- 3)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질권설정되며 이에 따라 잔고내역 및 거래내역, 제증명서 등에 질권설정 내역을 표기합니다.
- 4) 추가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질권이 설정됩니다.
- 5) 질권설정 해지는 융자금 전액 상환시 자동해지되며 질권설정 약정은 융자약정 해지시 자동해지 됩니다.

6.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

- 1) 상환방법에는 현금상환과 매도상환이 있습니다.
 - ① 현금상환 : 현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며,
 - ② 매도상환 : 융자 담보증권의 일부(또는 전부)를 매도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매도상환일은 매도증권의 결제일(수익증권의 경우 환매대금 입금일) 입니다.
- 2) 중도상환은 융자 지점에서 중도상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상환하시거나, 유선 및 HTS (HTS의 경우 주식, 채권담보융자 한정) 상으로도 상환이 가능합니다.
- 3) 만기일에 융자금을 미상환할 경우,
 - ① 상장주식의 경우 : 만기일 익영업일 아침 동시호가에 하한가로 반대매매 처리
 - ② 상장채권의 경우 :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처분하며, 이 경우 담보처분대금은 처분제 비용, 연체이자, 이자, 융자원금의 순으로 충당
 - ③ 수익증권의 경우 : 만기일 익영업일 아침에 기준가로 환매 처리
- 4) 채권담보융자의 경우 채권만기일에 자동상환 처리됩니다.

7. 반대매매순서

당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계좌에 두 가지 이상의 융자(증권담보 융자, 신용거래융자등)가 있을 경우,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며, 해당계좌에서 담보부 족발생시 반대매매 처리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) 신용융자종목



- ① 유통융자종목, 자기융자종목 순 ② 융자일이 우선순임
- 2) 증권담보융자 증권
 - ① 융자일 우선 ② 주식, 채권 순임
- 3) 기타 예탁/등록된 증권
- 8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되어 있는 증권담보융자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의해 제공됨

